제1284호
2011. 7. 28(목)

발행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집인 : 홍 보 관 광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3가 385-1)
전 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1-6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1
• 제2011-67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고 시

• 제2011-49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승인 공개 ····· 12
• 제2011-52호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 19
• 제2011-53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 20
• 제2011-54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 21
• 제2011-56호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

공 고

• 제2011-668호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 30
• 제2011-675호 공인등록 및 공고 ····· 31

인사발령

• 2011. 7. 25 ~ 7. 26 일자 ····· 3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내사랑영등포→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6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6조)
-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안 제7조)
-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의 열람에 제공
- 법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민원여권과 전화 02-2670-3087, 팩스 02-2670-358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구(구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에,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구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공개의 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즉시 공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공개의 가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즉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심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1-67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6.30.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확대와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기존 500미터)
-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할 경우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유효기간 :** 2015.11.23일까지 유효(기존 '13.11.23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월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50-9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전화번호 : 2670-3417, fax 2670-3628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상인간"을 "소상공인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간"을 "소상공인 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상공인간"을 "소상공인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간"을 "소상공인 간"으로, "중재 할"을 "중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0호까지에"를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영등포구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등을"을 "대규모점포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대규모점포등"을 각각 "대규모점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조건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를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7호·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9. ----------대규모점포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인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소상공인 간----------.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 간----------.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소상공인 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영등포구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 ------슈퍼마켓----------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업무)** ----------**소상공인 간**----------**중재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9. ----------**대규모점포 등**----------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 **제10호까지**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1킬로미터**----------.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영등포구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대규모점포 등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 등**----------**대규모점포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	④ ----**대규모점포 등**----------

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 등** ----------.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규모점포 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생 략)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 **대규모점포 등** ----------**조건 등**----------.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때,** ----------.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49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승인 공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기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일 : 2010. 7. 13(수)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결산개요

◦ 세입예산액 410,159,240,032(전년도 이월금 14,299,286,032원 포함)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561,751,795원이고 지출액은 340,530,883,0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7,030,868,70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57,030,868,70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633,725,000원
- 사고이월 7,062,671,300원
- 계속비이월 0원
- (국고·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50,082,00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84,390,398원이다.

2.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가. 회계별 결산규모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395,860	410,159	471,891	397,562	74,329
일반회계	345,681	359,885	386,377	348,035	38,342
특별회계	50,179	50,274	85,514	49,527	35,987
의료보호	517	517	651	532	119
주민소득	1,506	1,506	1,792	1,700	92
주차장	48,156	48,251	83,071	47,295	35,776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95,860	410,159	340,531	10,696	58,932
일반회계	345,681	359,885	326,193	10,577	23,115
특별회계	50,179	50,274	14,338	119	35,817
의료보호	517	517	388	0	129
주민소득	1,506	1,506	182	0	1,324
주차장	48,156	48,251	13,768	119	34,364

나.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345,681	359,885	386,378	348,035	38,343
지방세수입	105,652	105,652	108,179	106,308	1,871
지방세	105,652	105,652	108,179	106,308	1,871
보통세	104,715	104,715	106,501	105,703	798
과년도수입	937	937	1,678	605	1,073
세외수입	101,130	115,334	142,300	105,828	36,472
경상적수입	40,112	40,112	36,873	36,749	124
재산임대수입	414	414	482	451	31
사용료수입	8,707	8,707	7,836	7,743	93
수수료수입	6,120	6,120	6,377	6,377	0
징수교부금	23,747	23,747	21,589	21,589	0
이자수입	1,124	1,124	589	589	0
임시적세외수입	61,018	75,222	105,427	69,079	36,348
재산매각수입	13,858	13,858	14,707	14,478	229
순세계잉여금	21,125	21,125	13,523	13,523	0
이월금	4,616	18,820	18,820	18,820	0
예탁금및예수금	14,300	14,300	14,300	14,300	0
부담금	10	10	0	0	0
잡수입	3,444	3,444	9,542	5,398	4,144
과년도수입	3,665	3,665	34,535	2,560	31,975
지방교부세	5,163	5,163	4,671	4,671	0
조정교부금및보전금	29,542	29,542	29,460	29,460	0
조정교부금	26,960	26,960	25,738	25,738	0
재정보전금	2,582	2,582	3,722	3,722	0
보조금	104,194	104,194	101,768	101,768	0
국고보조금	46,706	46,706	46,076	46,076	0
시비보조금	57,488	57,488	55,692	55,692	0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45,681	359,885	326,194	10,577	23,114
일반공공행정	45,300	50,598	45,599	7	4,992
입법및선거관리	4,268	4,268	3,045	0	1,223
지방행정,재정지원	1,098	1,098	1,024	0	74
일반행정	39,934	45,232	41,530	7	3,695
공공질서및안전	810	810	713	0	97
경찰	57	57	9	0	48
재난방재, 민방위	753	753	704	0	49
교육	6,951	7,051	6,750	0	301
유아및초중등교육	6,597	6,597	6,322	0	275
평생, 직업교육	354	454	428	0	26
문화및관광	7,943	7,955	7,236	0	719
문화예술	4,397	4,397	3,949	0	448
관광	120	132	110	0	22
체육	3,426	3,426	3,177	0	249
환경보호	21,158	24,399	22,632	400	1,367
상하수도.수질	4,927	6,585	5,633	400	552
폐기물	14,765	16,348	15,634	0	714
환경보호일반	1,466	1,466	1,365	0	101
사회복지	109,535	109,792	103,316	14	6,462
기초생활보장	29,847	29,988	29,188	0	800
취약계층지원	5,403	5,403	4,970	0	433
보육, 가족및여성	34,011	34,050	30,608	0	3,442
노인청소년	31,707	31,718	30,606	14	1,098
노동	6,559	6,625	6,037	0	588
보훈	305	305	299	0	6
사회복지일반	1,703	1,703	1,608	0	95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보건	**7,869**	**8,594**	**7,781**	**0**	**813**
보건의료	7,780	8,505	7,704	0	801
식품의약안전	89	89	77	0	12
농림해양수산	**74**	**74**	**71**	**0**	**3**
농업농촌	74	74	71	0	3
산업중소기업	**3,162**	**3,431**	**2,494**	**671**	**266**
산업진흥고도화	2,512	2,781	1,937	671	173
에너지및자원개발	650	650	557	0	93
수송및교통	**28,153**	**31,820**	**23,344**	**7,556**	**920**
도로	27,052	30,719	22,365	7,556	798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01	1,101	979	0	122
국토및지역개발	**18,716**	**20,269**	**15,799**	**1,929**	**2,541**
수자원	2,352	2,352	1,932	163	257
지역및도시	16,364	17,917	13,867	1,766	2,284
과학기술	**248**	**248**	**225**	**0**	**23**
과학기술일반	248	248	225	0	23
예비비	**2,803**	**1,801**	**0**	**0**	**1,801**
예비비	2,803	1,801	0	0	1,801
기타	**92,959**	**93,043**	**90,234**	**0**	**2,809**
기타	92,959	93,043	90,234	0	2,809

다. 특별회계 예산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가)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17	517	650	531	119
세외수입	62	62	196	77	119
경상적수입	1	1	1	1	0
이자수입	1	1	1	1	0
임시적세외수입	61	61	195	76	119
순세계잉여금	10	10	10	10	0
이월금	47	47	47	47	0
융자금원금수입	2	2	14	0	14
잡수입	2	2	124	19	105
보 조 금	455	455	454	454	0
국고보조금	228	228	227	227	0
시비보조금	227	227	227	227	0

(나)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17	517	388	0	129
사회복지	517	517	388	0	129
기초생활보장	517	517	388	0	129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가)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505	1,505	1,792	1,700	92
세외수입	1,505	1,505	1,792	1,700	92
경상적수입	47	47	78	78	0
이자수입	47	47	78	78	0
임시적세외수입	1,458	1,458	1,714	1,622	92
순세계잉여금	994	994	994	994	0
융자금원금수입	464	464	720	628	92

(나)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505	1,505	182	0	1,323
사회복지	1,505	1,505	182	0	1,323
기초생활보장	1,505	1,505	182	0	1,323

(3)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가)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8,156	48,251	83,070	47,295	35,775
세외수입	46,827	46,922	81,761	45,986	35,775
경상적수입	9,291	9,291	9,386	9,386	0
사업수입	8,508	8,508	8,554	8,554	0
이자수입	783	783	832	832	0
임시적세외수입	37,536	37,631	72,375	36,600	35,775
순세계잉여금	27,954	27,954	27,954	27,954	0
이 월 금	678	773	773	773	0
잡수입	4,616	4,616	6,093	4,198	1,895
과년도수입	4,288	4,288	37,555	3,675	33,880
보 조 금	1,329	1,329	1,309	1,309	0
시도비보조금	1,329	1,329	1,309	1,309	0

(나)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48,156**	**48,251**	**13,768**	**119**	**34,364**
수송및교통	**45,391**	**45,486**	**11,319**	**119**	**34,048**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5,391	45,486	11,318	119	34,048
기타	**2,765**	**2,765**	**2,449**	**0**	**316**
기타	2,765	2,765	2,449	0	316

3. 기금운용상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가)	당해년도 운영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나)	수납액	지출액	
합 계	25,150	△13,191	11,324	24,515	11,958
통합관리기금	18,630	△12,778	2,022	14,800	5,852
청사건립기금	250	△250	8	258	0
장학기금	0	68	200	132	68
중소기업육성기금	1,749	520	4,598	4,078	2,269
기초생활보장기금	0	69	109	40	69
여성발전기금	0	0	200	200	0
노인복지기금	1	0	100	100	1
체육진흥기금	257	△5	445	450	25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0	△50	85	135	20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90	258	340	82	348
옥외광고정비기금	0	284	315	31	284
도로굴착복구기금	266	△202	1,596	1,798	64
재난관리기금	2,867	△875	625	1,500	1,992
식품진흥기금	969	△230	681	911	739

4. 채권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1,585**	**△609**	**10,224**	**10,833**	**20,976**
일 반 회 계		**7,891**	**102**	**107**	**5**	**7,993**
특별회계	**소 계**	**1,859**	**△443**	**590**	**1,033**	**1,416**
	의료급여기금	10	3	4	1	13
	주민소득지원	1,849	**△446**	586	1,032	1,403
기금	**소 계**	**11,835**	**△268**	**9,527**	**9,795**	**11,567**
	중소기업육성	10,817	**△366**	8,502	8,868	10,451
	환경미화원자녀	223	△44	123	167	179
	식품진흥	795	142	902	760	937

5. 채무 현재액-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합 계		1,104,877	63,208	37,476	1,130,609	
행정재산	소 계	1,091,047	62,054	35,894	1,117,207	
	공공용 재산	810,308	47,400	11,120	846,588	
	공 용 재 산	280,739	14,654	24,774	270,619	
	기업용 재산	0	0	0	0	
보 존 재 산		0	0	0	0	
일 반 재 산		13,830	1,154	1,582	13,402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증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456	154	47	107	61	18	43	549
금액	3,313	892	219	673	271	90	181	3,934

8. 공기업운영상황 :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52호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에 의거 사업추진계획 승인(2006.4.21일자 공고)된 영등포구 신길동 221-1번지 일대 신길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같은법 제39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명 칭 : 신길시장 시장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21-1번지 일대
- 면 적 : 2,587.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신길시장번영회 대표 심재용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20번지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1. 7. 2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영등포구 신길동 221번지 35호 (1㎡)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 대지면적 : 2,587.0㎡
- 건축면적(건폐율) : 1,694.590㎡(68.15%)
- 연면적(용적률) : 19,734.254㎡(394.12%)
- 층수(높이) : 지하5층, 지상15층(49.0m)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78세대),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80.434	80.376	84.782
계	공동주택	1	78	39	26	13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 53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계 측량성과

번호	기준점 명 칭	ITRF2000(m)		GRS80 타원체				투영 원점	설치일 (관측일)	소재지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1	보2	X	-3041907.140	위도	37-30-40.41838	X	545754.470	중부	2011. 7.8.	영등포동647-1 대우드림타운 217동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732.030	경도	126-54-17.30641	Y	191583.806					
		Z	3862617.682	타원체고	106.860							
2	보3	X	-3042937.797	위도	37-30-30.76505	X	545455.771	중부	2011. 7.8.	신길동4936 푸른숲마을(아) 104동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179.584	경도	126-55-04.36974	Y	192739.372					
		Z	3862378.573	타원체고	101.889							
3	보5	X	-3041557.695	위도	37-30-26.39100	X	545322.644	중부	2011. 7.8.	도림동231-8 정호세인트빌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1277.144	경도	126-53-52.60156	Y	190976.612					
		Z	3862246.046	타원체고	59.922							
4	보14	X	-3042404.615	위도	37-30-35.39127	X	545598.920	중부	2011. 7.8.	신길동210 우신초등학교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431.846	경도	126-54-40.84319	Y	192161.699					
		Z	3862467.375	타원체고	61.918							
5	보15	X	-3041813.541	위도	37-29-59.82611	X	544503.717	중부	2011. 7.8.	대림동779-10 콤텍시스템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1713.110	경도	126-53-50.27493	Y	190918.575					
		Z	3861599.115	타원체고	64.508							
6	보17	X	-3042633.109	위도	37-30-55.94137	X	546231.970	중부	2011. 7.8.	신길동50-2 한독빌딩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49808.780	경도	126-55-03.52005	Y	192719.183					
		Z	3862989.027	타원체고	93.281							
7	보18	X	-3042881.205	위도	37-29-34.68504	X	543727.635	중부	2011. 7.8.	대림동946-1 대림동현대(아)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1539.513	경도	126-54-29.27501	Y	191875.764					
		Z	3861007.523	타원체고	102.894							
8	보20	X	-3042533.570	위도	37-29-12.40822	X	543041.593	중부	2011. 7.8.	대림동1101-14 극동빌딩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2293.669	경도	126-53-59.52545	Y	191144.237					
		Z	3860444.404	타원체고	73.037							
9	보24	X	-3041593.312	위도	37-30-40.83289	X	545767.651	중부	2011. 7.8.	도림동819 대우미래사랑 102동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960.781	경도	126-54-01.49531	Y	191195.515					
		Z	3862629.557	타원체고	109.714							
10	보33	X	-3043308.403	위도	37-31-00.46664	X	546370.713	중부	2011. 7.8.	여의도동5-7 여의교북단	표철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49141.130	경도	126-55-41.83588	Y	193660.232					
		Z	3863066.589	타원체고	38.931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 54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측량성과

번호	기준점 명 칭	ITRF2000(m)		GRS80 타원체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 좌표(m)		투영 원점	설치일 (관측일)	소재지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1	1299	X	-3040715.368	위도	37-31-32.46474	X	547359.802	중부	2011. 7.8.	당산동3가 270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331.052	경도	126-53-48.30134	Y	190873.233					
		Z	3863845.076	타원체고	32.471							
2	1300	X	-3040751.892	위도	37-31-26.76047	X	547183.978	중부	2011. 7.8.	당산동3가 342-2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437.054	경도	126-53-46.89911	Y	190838.608					
		Z	3863705.280	타원체고	31.942							
3	1301	X	-3041000.488	위도	37-31-24.85567	X	547124.946	중부	2011. 7.8.	당산동3가 6-1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295.899	경도	126-53-58.44676	Y	191122.095					
		Z	3863659.168	타원체고	32.703							
4	1302	X	-3041030.035	위도	37-31-20.48863	X	546990.337	중부	2011. 7.8.	당산동1가 141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377.183	경도	126-53-57.42152	Y	191096.776					
		Z	3863552.955	타원체고	33.635							
5	1303	X	-3041065.429	위도	37-31-14.95758	X	546819.851	중부	2011. 7.8.	당산동1가 7-2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4050478.973	경도	126-53-56.08534	Y	191063.783					
		Z	3863416.783	타원체고	32.113							

지적도근점 지역좌표계 측량성과

번 호	기준점 명 칭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기준원점명	설치일 (관측일)	소재지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1	1299	X	447053.86	중부원점	2011. 7.8.	당산동3가 270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90802.49					
2	1300	X	446878.04	중부원점	2011. 7.8.	당산동3가 342-2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90767.87					
3	1301	X	446819.01	중부원점	2011. 7.8.	당산동3가 6-1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91051.36					
4	1302	X	446684.40	중부원점	2011. 7.8.	당산동1가 141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91026.04					
5	1303	X	446513.92	중부원점	2011. 7.8.	당산동1가 7-2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90993.05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56호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9호(2008.10.30.)로 지정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53,293.0	-	53,293.0	

다. 주요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확정(249.62%) 및 정비계획 변경

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3,293.00	-	53,293.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846.00	증)72.00	7,918.00	14.9	
	도 로	4,974.00	증)72.00	5,046.00	9.5	
	어린이공원	2,872.00	-	2,872.00	5.4	
택 지 (획 지)	소 계	45,447.00	감)72.00	45,375.00	85.1	
	공동주택용지	36,181.00	감)91.00	36,090.00	67.7	
	종교부지1	7,413.00	-	7,413.00	13.9	존치+대체
	종교부지2	689.00	-	689.00	1.3	대체
	종교부지3	646.00	증)19.00	665.00	1.2	대체
	학교법인부지	518.00	-	518.00	1.0	대체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부여)에서 제외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8	20~30	집산 도로	4,667	가산동 550-9	대림동 909-2	일반 도로		서고 14 (1981. 1. 21)	
변경	대로	3	118	20~30	집산 도로	4,667 (111)	가산동 550-9	대림동 909-2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2	-	8~15	국지 도로	560	대림동 897-1	대림동 952-15	일반 도로		영고 49호 (1994. 8. 13)	
변경	소로	2	133	8~17	국지 도로	560	대림동 897-1	대림동 952-15	일반 도로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8	국지 도로	147	중로1-60	대림동 912-3	일반 도로		서고 2008-379 (2008. 10. 30)	
변경	소로	2		8	국지 도로	147	대로3-118	대림동 912-3	일반 도로			기점 정정
기정	대로	3	28	25~28	집산 도로	2,780	영등포 공원	대림동 삼거리	일반 도로		62.12.8(건고177)→92.12(서413호)	
기정	소로	1		12	국지 도로	218	대림동 918-77	대림동 912-19	일반 도로		서고 2008-379 (2008. 10. 3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18	3-118	일부구간 확폭 (B=20→20~23.2m, L=11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사업지 주출입구 변경으로 주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확폭
2	2-133	가각 변경 및 도로번호 정정, 대림1주택재건축(인접부지) 도로확폭에 따른 폭원변경 (8~15m → 8~17m)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가각변경 및 기재누락에 따른 도로번호 정정, 대림1주택재건축 도로확폭(2m)에 따른 폭원변경
2-	2-	기점 정정	기점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916-7번지일대	191.25	감)135.09	56.16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917-49번지일대	29,688.28	증)13,130.36	42,818.64	
복리시설	경로당	912-63번지일대	221.61	감)82.52	139.09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916-7번지일대	258.69	증)1,144.40	1,403.09	
복리시설	작은도서관	916-4번지일대	217.01	감)115.76	101.25	
복리시설	보육시설	912-63번지일대	173.24	증)13.66	186.90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911-46번지일대	16,819.83	감)13,337.31	3,482.52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917-10번지일대	970.99	증)366.46	1,337.45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923-1번지일대	652.46	감)100.26	552.20	
부대시설	휴 게 소	917-49번지일대	4개소	감)2개소	2개소	

4)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

○변경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th></tr>
<tr><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예 정
법적상한</th></tr>
<tr><td>택지1</td><td>36,181.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30%이하</td><td>223.22%</td><td>250%이하</td><td>높이66m이하
(최고21층이하)
평균18층이하</td></tr>
<tr><td>획지
1,2,3</td><td>7,413.0</td><td>영등포구 대림동
929-1번지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4</td><td>689.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1-26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5</td><td>646.0</td><td>영등포구 대림동
942-10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9</td><td>518.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8-53번지 일대</td><td>학교법인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6">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기정</th></tr>
<tr><th>조합분양</th><th>소형주택</th><th>합계</th><th>비율(%)</th></tr>
<tr><td>합 계</td><td>682</td><td>60</td><td>742</td><td>100.0</td></tr>
<tr><td>전용 60㎡이하</td><td>178</td><td>60</td><td>238</td><td>32.0</td></tr>
<tr><td>전용60㎡~85㎡이하</td><td>436</td><td>-</td><td>436</td><td>58.8</td></tr>
<tr><td>전용85㎡초과</td><td>68</td><td>-</td><td>68</td><td>9.2</td></tr>
<tr><td>연면적 85㎡이하 구성비(%)</td><td colspan="4">87.48%</td></tr>
</table>
</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6">• 인접도로 및 대지 경계부분
: 4m(인접도로와 간격유지 및 인도부속형 대지내 공지로 조성)</td></tr>
</table>

○변경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th></tr>
<tr><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택지1</td><td>36,090.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26%이하</td><td>223.43%
이하</td><td>249.62%이하</td><td>높이63m이하
(최고21층이하)
평균18층이하</td></tr>
<tr><td>획지
1,2,3</td><td>7,413.0</td><td>영등포구 대림동
929-1번지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4</td><td>689.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1-26번지 일대</td><td>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5</td><td>665.0</td><td>영등포구 대림동
942-10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9</td><td>518.0</td><td>영등포구 대림동
918-53번지 일대</td><td>학교법인시설</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6">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변경</th></tr>
<tr><th>조합분양</th><th>소형주택</th><th>합계</th><th>비율(%)</th></tr>
<tr><td>합 계</td><td>757</td><td>56</td><td>813</td><td>100.0</td></tr>
<tr><td>전용 60㎡이하</td><td>157</td><td>56</td><td>213</td><td>26.2</td></tr>
<tr><td>전용60㎡~85㎡이하</td><td>564</td><td>-</td><td>564</td><td>69.4</td></tr>
<tr><td>전용85㎡초과</td><td>36</td><td>-</td><td>36</td><td>4.4</td></tr>
<tr><td>연면적 85㎡이하 구성비(%)</td><td colspan="4">93.40%</td></tr>
</table>
</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6">• 인접도로 및 대지 경계부분
: 4m(인접도로와 간격유지 및 인도부속형 대지내 공지로 조성)</td></tr>
</table>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에 과한 사항

○변경전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법적상한
용 적 률</td><td>• 적용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50.00%</td><td>-</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223.22%</td><td>-</td></tr>
<tr><td>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td><td>·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250.00% - 223.22%) X 50%
= 26.78% X 50% = 13.39%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X 13.39% = 36,181㎡ X 13.39%
= 4,844.64㎡ 이상</td><td>-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td></tr>
<tr><td>소형주택
건설계획</td><td>• 공급 계획
<table>
<tr><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
<tr><td>합 계</td><td>60</td><td>4,854.69㎡</td></tr>
<tr><td>80.9115</td><td>60</td><td>4,854.69㎡</td></tr>
</table>
* 계획 4,854.69㎡> 법정 4,844.64㎡(충족)</td><td>-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활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0조(재건축소형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td></tr>
<tr><td>확보방법</td><td>·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td><td></td></tr>
</table>

○변경후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법적상한
용 적 률</td><td>• 적용 법적상한용적률 : 249.62%</td><td>-</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223.43%</td><td>-</td></tr>
<tr><td>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td><td>·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249.62% - 223.43%) X 50%
= 26.57% X 50% = 13.285%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X 13.285% = 36,090.0㎡ X 13.285%
= 4,794.56㎡ 이상</td><td>-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td></tr>
<tr><td>소형주택
건설계획</td><td>• 공급 계획
<table><tr><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tr><td>합 계</td><td>56</td><td>4,837.1288㎡</td></tr><tr><td>86.3773</td><td>56</td><td>4,837.1288㎡</td></tr></table>* 계획 4,837.13㎡> 법정 4,794.56㎡(충족)</td><td>-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활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0조(재건축소형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td></tr>
<tr><td>확보방법</td><td>·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td><td></td></tr>
</table>

마. 관련 도면 : 붙임 참조

1)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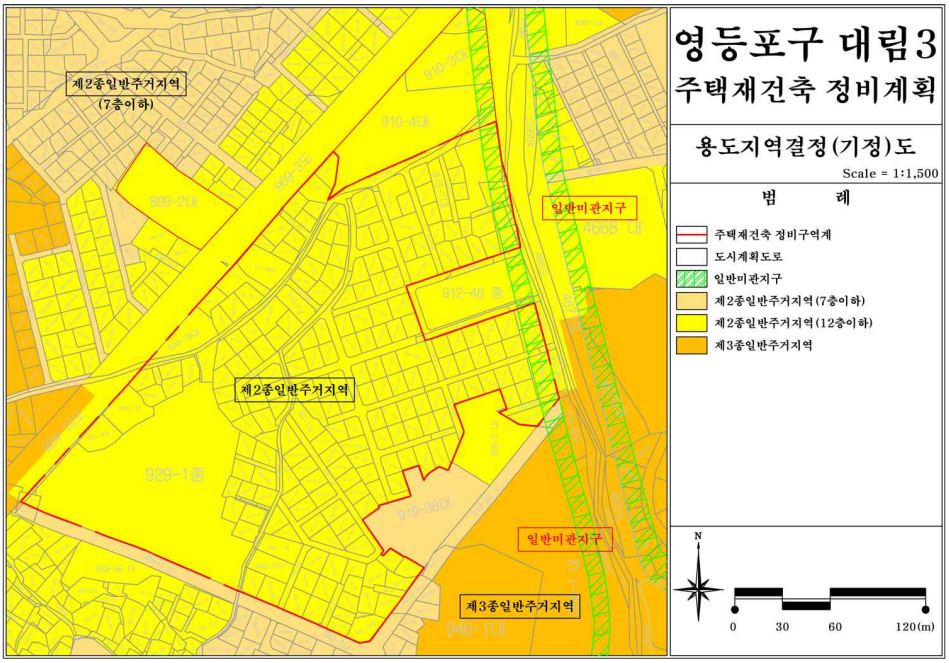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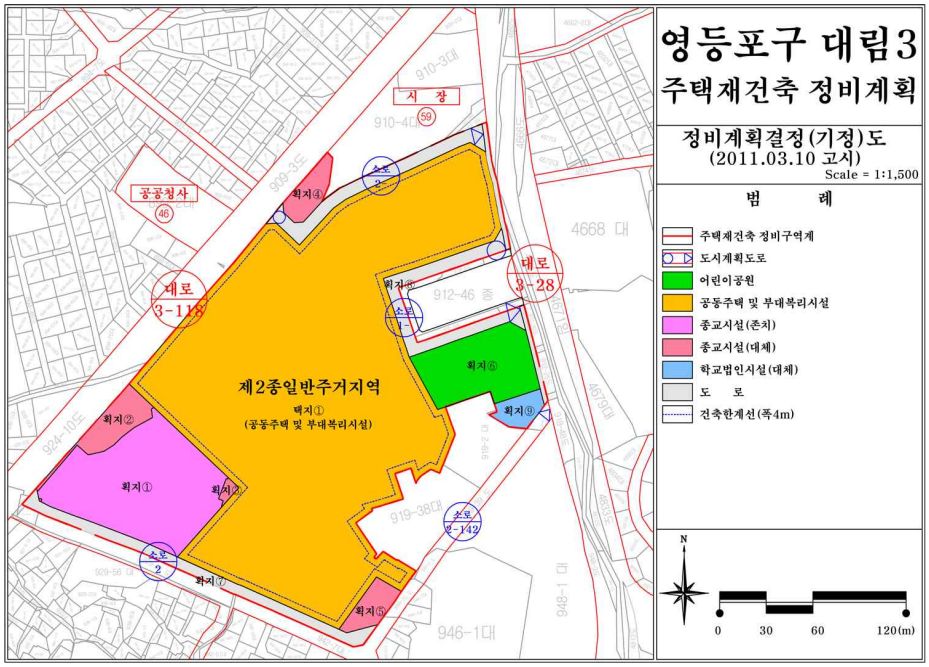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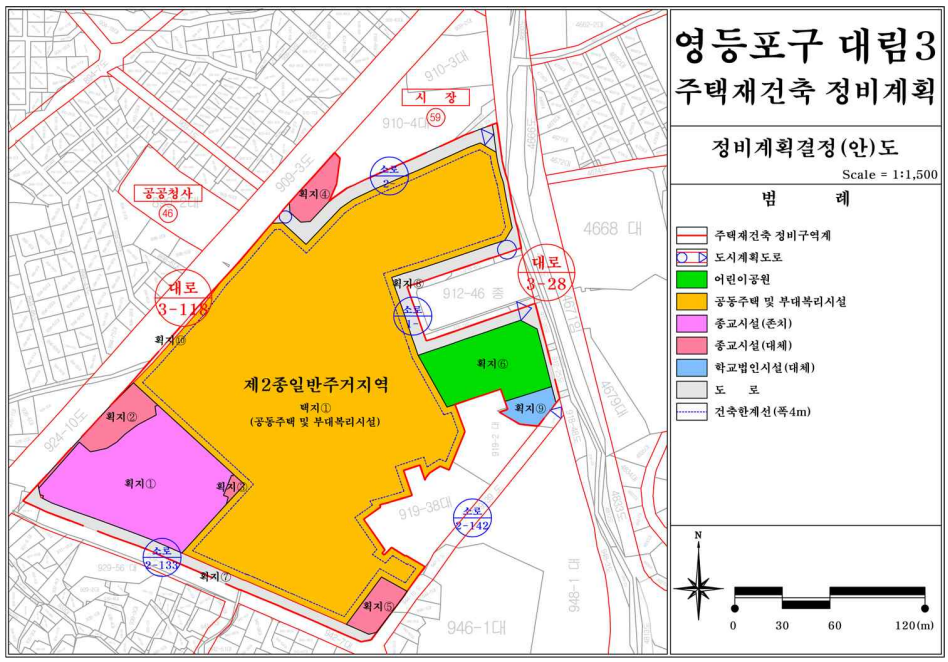
바.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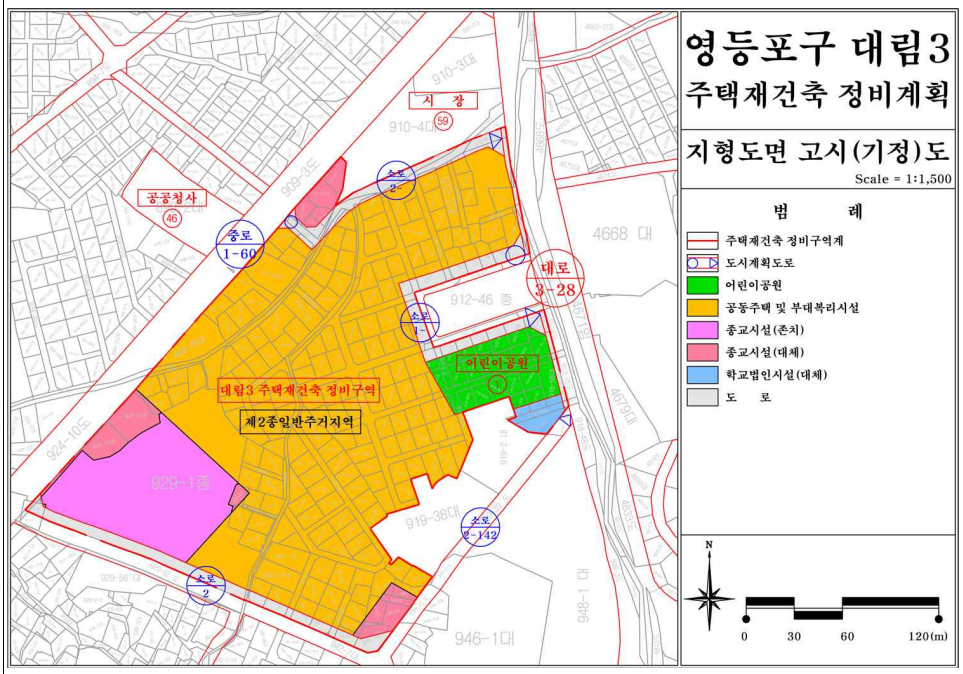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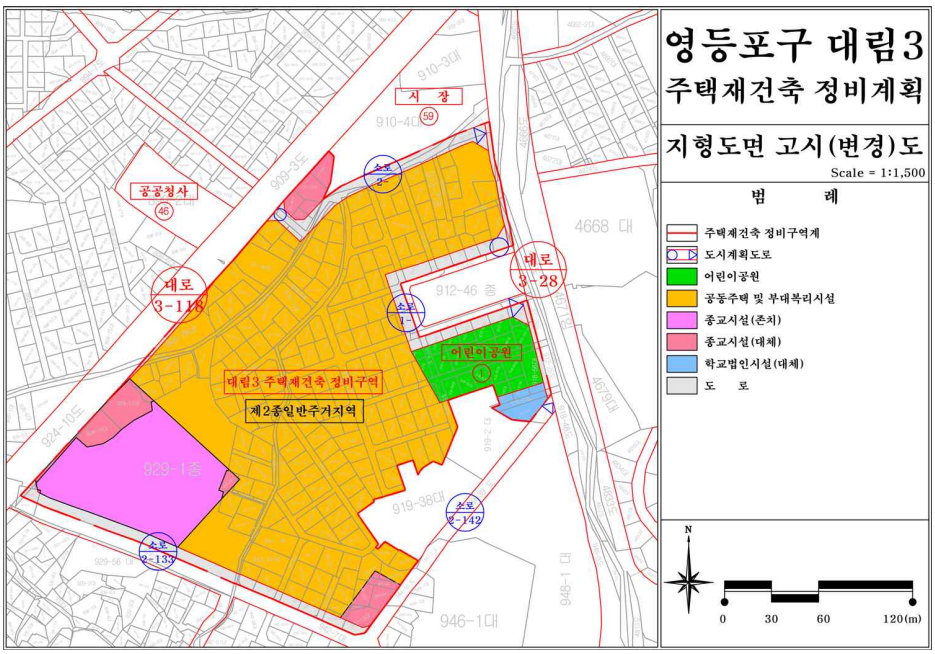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기정	
변경	변경없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

기정	
변경	

○ 지형도면 고시도

기정	
변경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668호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3가 일대 영등포동6~7가 일대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 또는 전자우편(heedeok@ydp.go.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2)
다. 열람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370,000	감)46,577 증)11,817	335,240	영등포구 공고 제2000-182호 (2000.5.1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675호

공 인 등 록 및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 일자
특수공인 (인증기용)	영등포구청장인 문래동 민원 제3 사무전용	전서체 2.4cm× 2.4cm 특수우레탄		신규제작	2011.07.27.
특수공인 (인증기용)	문래동장의인 민원 제3사무전용	전서체 2.1m× 2.1m 특수우레탄		신규제작	2011.07.27.

인사발령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114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이 효 영 (80.09.25)	복직을 명함 푸른도시과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공업 서기(전기)

(발령연월일 : 2011년 07월 25일자)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115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강 태 규 (72.06.21)	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1.07.26부터 2012.07.25까지)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1년 07월 26일자)